

# 예 산 총 칙

2008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0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76,036,049	5,281,081
일반회계	169,516,375	5,085,491
특별회계	6,519,674	195,590
기타특별회계	6,519,674	195,59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320,474	9,614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	417,044	12,511
주차장특별회계	5,272,362	158,171
지하수관리 특별회계	198,573	5,957
기반시설 특별회계	311,221	9,337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2008년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5,281,081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8,114,347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

제 6 조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·시비보조금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 보고한다.